

2023년 화옹지구(7공구) 매립지등 관리·처분 계획 공고

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화옹지구 7공구 매립지등에 대한 관리·처분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되어 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12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관리·처분 대상면적

(단위 : m²)

지 구	공 구	준공면적 (A)	관리·처분계획면적 (일시사용) (B)	제외면적 (A-B)	행정구역 (토지소재지)
화옹	7공구	10,855,817.3	6,374,205.7	4,481,611.6	화성시 남양읍, 서신면, 우정읍,

※ 제외면적은 잡종지 및 임야, 농업기반시설부지(도로, 용수로, 배수로 등) 등 임.

2. 관리·처분 방법 : 일시사용(1년)

3. 관리·처분 계획별 구획 및 면적

- 「매립지등 관리·처분에 관한 규정」 제25조에 따라 매립지등 간척지 관리·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, 해당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임대자(농지은행부문관리자)가 결정

4. 관리·처분 대상자 결정방법 등

- 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13조 및 「매립지등 관리·처분에 관한 규정」 제12조 같은 규정 별표 2에 따라 결정
- ※ 관련규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'23년 매립지등 관리·처분계획 공고일 (2023. 03. 09) 이전에 설립된 법인에 한함.

5. 관리·처분 일정

- 매립지등 관리·처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('23.02.27~03.16), 일시사용 신청공고('23.03.18~03.24), 일시사용 신청 접수 및 선정('23.3.20~3.24), 계약체결('23.3.27~3.31)
- ※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공고 제 2023 - 3호

6. 기타사항

- 매립지등 관리·처분계획에 대한 필지, 면적, 도면은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(시설관리부)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
- 일시사용관련 세부사항(규모, 자격기준, 신청방법 등)은 「매립지등 관리·처분에 관한 규정」 제25조에 따른 매립지등 관리·처분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, 일시사용 신청관련 사항은 별도 공고 계획입니다.
- 이 공고문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농어촌정비법령」, 「매립지등의 관리·처분에 관한 규정」, 「매립지등의 관리·처분에 관한 지침」에 따릅니다.
- 추가 정보사항은 우리공사 화안사업단(031-412-1436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위와 같이 공고함.

2023년 03월 09일



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장

